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4. 4.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 4.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기열 의원 등 6명(박정환, 권숙자, 도하석, 서민우, 이영빈)
- 발의일자: 2024. 4. 5.
- 회부일자: 2024. 4. 5.
- 검토기간: 2024. 4. 5. ~ 4. 9.(5일간)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의 정비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을 변경함(안 제17조)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등을 변경함(안 제63조제1항)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4. 5. ~ 4. 15.):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7조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변경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일치되게 하였고,
 - 안 제63조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등을 변경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6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u>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u>
<u>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u>	<u>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1항과 같음)</u>
<u>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이내 분납</u> <u>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u> <u>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u> <u>4. 5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u> <p>② (생 략)</p>	<u>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50만원 초과: 6월 이내 2회 분납</u> <u>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u> <u>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u> <u>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u>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